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여성기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라 후속으로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고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의 심의 기구 변경 (안 제3조)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로 이관

나. 균형성장촉진위원회 내용 삭제 (안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균형성장촉진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 삭제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3. ~ 2024.2. 13.)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전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 -----.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⑤ -----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 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의 ----- ----- ----- -----
제4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및 조달청장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	<삭 제>

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7. 그 밖에 경제분야·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 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 항제7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解囑)할 수 있다.	<삭 제>
--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향상과 디자인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삭 제>

<삭 제>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427